

# 외과 세부.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

## 제 1 조 (목적)

본 규칙은 외과 세부.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 중 외과 세부.분과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조 (대상)

연수교육의 대상은 외과전문의로서 외과 세부.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.

## 제 3 조 (주관)

연수교육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감독 하에 해당 분과 위원회가 주관 실시한다.

## 제 4 조 (교육회기 및 교육시간)

- 1)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.
- 2) 각 교육회기에 하기 제6조 제1항의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을 15평점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 제 5 조 (교육기관)

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.

- 1) 분과위원회
- 2)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

## 제 6 조 (연수교육의 인정한계)

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- 1) 관리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에서 인정하는 연수강좌 및 실습
- 2)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공인학회, 인정학회와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, 실습 및 학술대회
- 3) 학술대회 평점은 세부.분과전문의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의 평점으로 한다.

## 제 7 조 (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)

- 1)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아래 교육회기의 연수교육계획서를 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 
단, 연수교육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연수교육은 실시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, 1개월 전에 신청하지 않은 연수교육은 평점승인을 불가 한다.
- 2)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20 일 전에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3) 연수교육 실시 후 반드시 2주일 이내에 결과보고(결과보고서, 평점 이수자 내역서)를 하여

야 한다.

- 4)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이사장이 대한외과학회지와 대한외과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이때 제 6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연수강좌 및 실습 종류와 일정 그리고 평점을 같이 공고한다. 회기별 총괄계획서에 포함된 연수강좌 및 실습 일정은 각 수련병원에 따로 배포한다.

제 8 조 (등록비)

연수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대,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 9 조 (평점카드 교부)

관리위원장은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해야 한다.

제 10 조 (평점)

평점 인정은 연수교육 및 논문으로 하며 이의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.  
(단, 연수교육의 1일 교육상한 점수는 6평점으로 한다.)

1) 연수교육

교육종류	평 점
1. 연수강좌	1평점/1시간
2. 실습	1평점/1시간
3. 학술대회	
공인학회	6평점/1일
인정학회	5평점/1일
관련학회	2평점/1일

- (1)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학회는 평점카드 사본을 제출하고, 국제학회는 명찰 또는 참석확인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.
  - (2) 인정 및 관련학회의 학술대회 논문 발표 시 제1발표자는 구연, 포스터에 관계없이 1평점을 가산한다.
  - (3) 연수강좌와 실습의 종류와 인정은 세부.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
- 2)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별표 2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 1저자와 교신저자는 10평점, 공저자는 6점으로 계산한다.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%를 계산한다.

제 11 조 (보칙)

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외과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- 1) 본 규칙은 대한외과학회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